

영등포구의회
제17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9. 1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48호로 2012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청소년독서실 운영개선 및 관계 법령 준수 등을 위하여 운영 조례
일부를 개정·보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독서실 위치를 새 주소(도로명 주소)로 정비(안 제3조 별표1)
- 나. 독서실 사물함 사용기준 조정(안 제5조 별표2)
- 다. 독서실 휴관일을 격주에서 매주로 조정(안 제6조제1항제1호)
- 라. 사용료별 감면비율 구체화 명시 및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
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
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- 상위법인 「도로명주소법」의 개정·시행(2011. 8. 4)으로 독서실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함.(안 제3조 별표1)
- 월별 이용자보다 일일 이용자가 많은 사물함 일일 이용 기준을 신설 규정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.(안 제5조 별표2)
- 격주 금요일 순환휴관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매주 월, 목, 금요일 중 1일을 휴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관일을 변경한 것은, 독서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(안 제6조제1항제1호)
- 또한 “다둥이 행복카드” 소지자 가정의 청소년이용자에게 추가 감면혜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.(안 제7조)

○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이용률 제고 등 독서실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임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

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: 서울시, 강남구 외 16개구

관 련 법 령

■ 청소년기본법

-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5조(자녀 양육부담 경감)**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.
1.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
 2.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
 3.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
 4.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업
 5. 기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

■ 근로기준법

- 제50조(근로시간)**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 <신설 2012.2.1>

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,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10.6.4>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.

<개정 2010.6.4>

제55조(휴일)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.